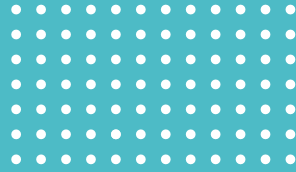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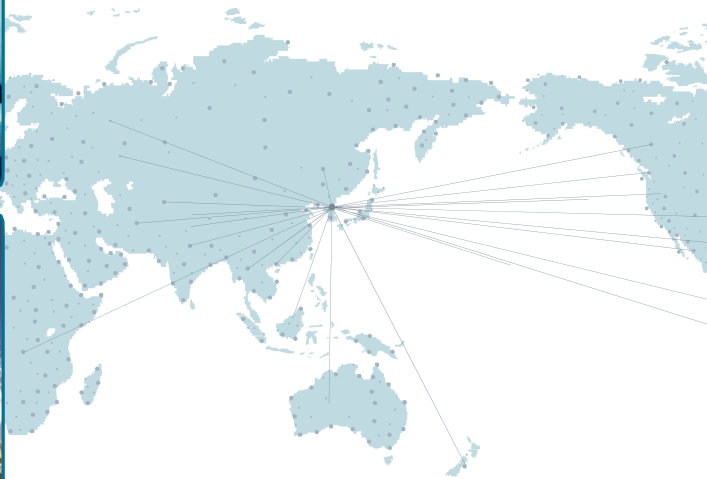
# “팬택씨앤아이계열”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 팬택씨앤아이계열 재해예방

팬택씨앤아이계열은 구성원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01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2) 법령 관련 주요 체크 사항

# 02

## 안전관리체계 구축

- 1) 안전관리체계의 정의 및 필요성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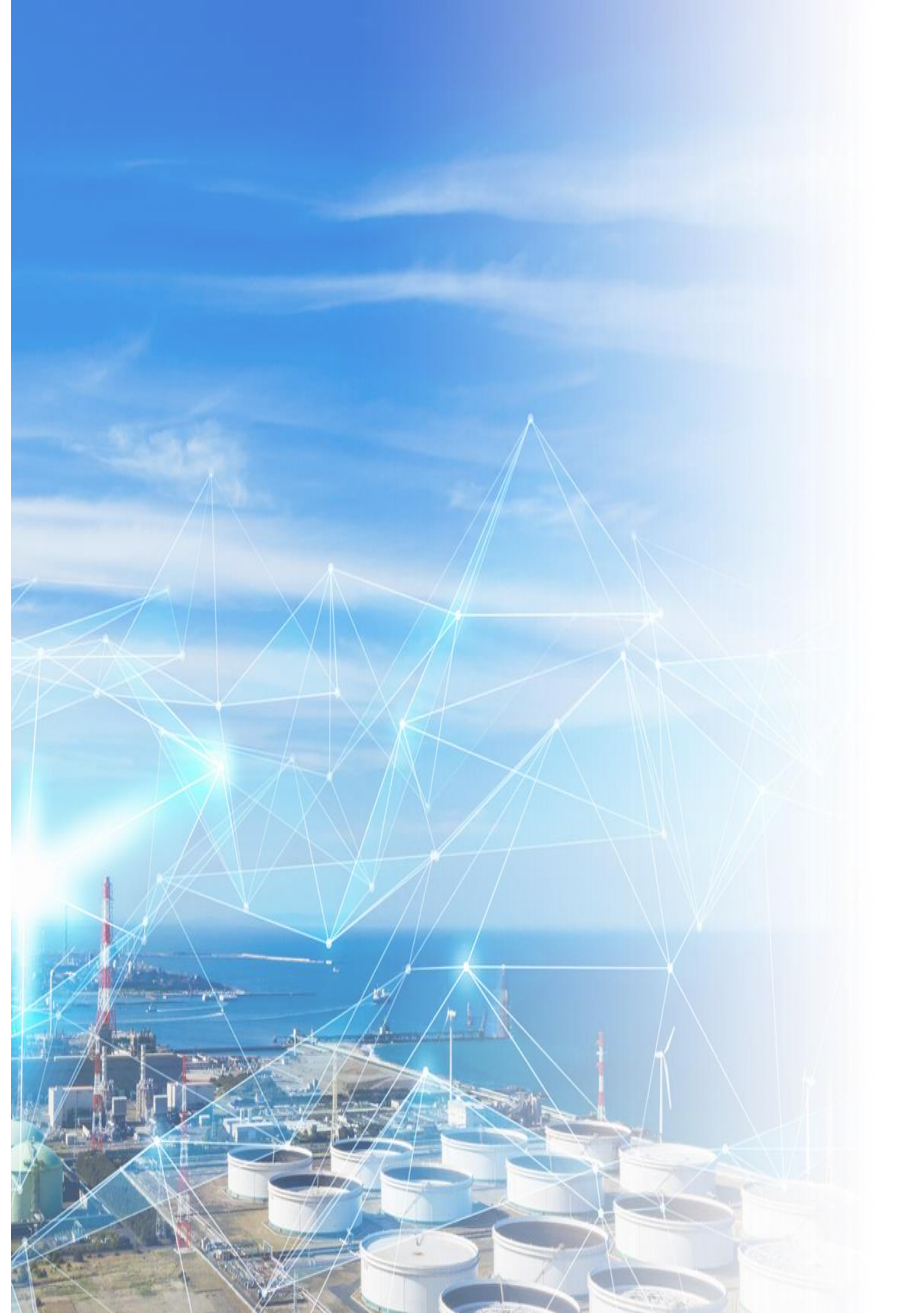
# 03

##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메뉴얼

- 1) 중대재해 대응 체계
- 2) 치유와 회복

# 참고

참고. 물류 등 운송 직군 관련 재해 유형



##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법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2) 법령 관련 주요 체크 사항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⑦ 종사자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1) 안전관리체계의 정의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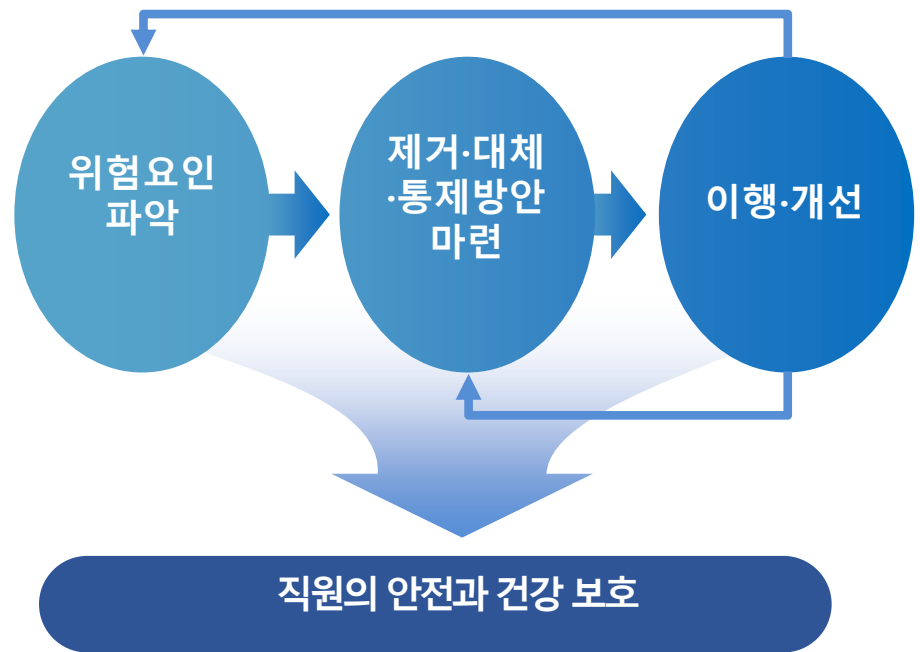
#### ① 안전관리체계란?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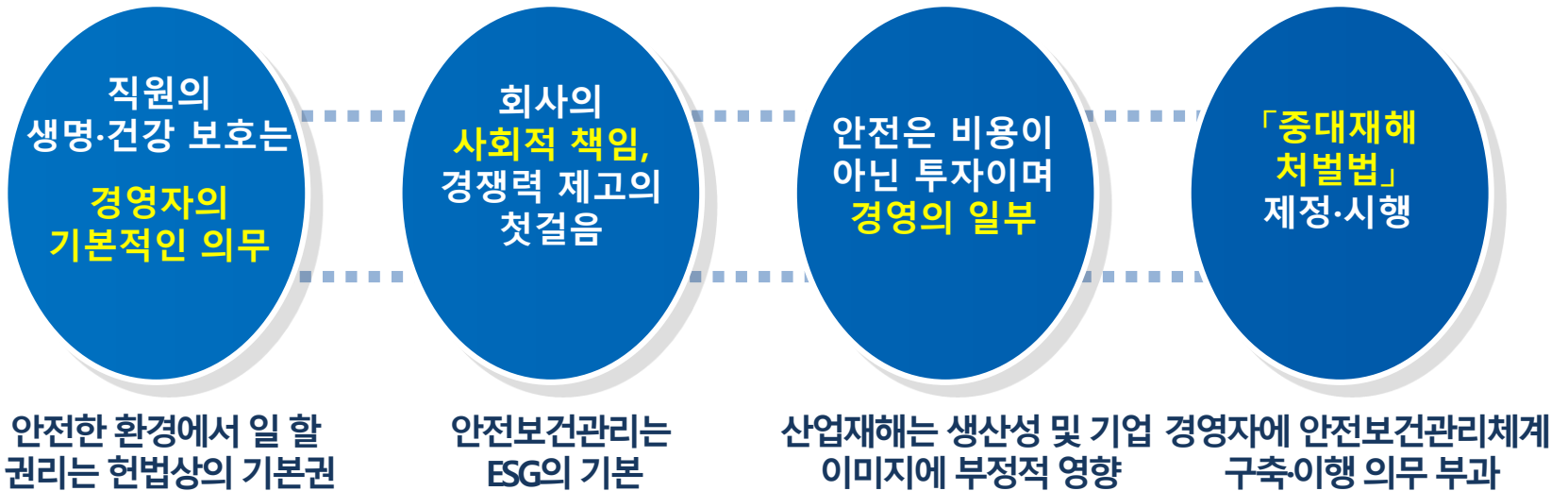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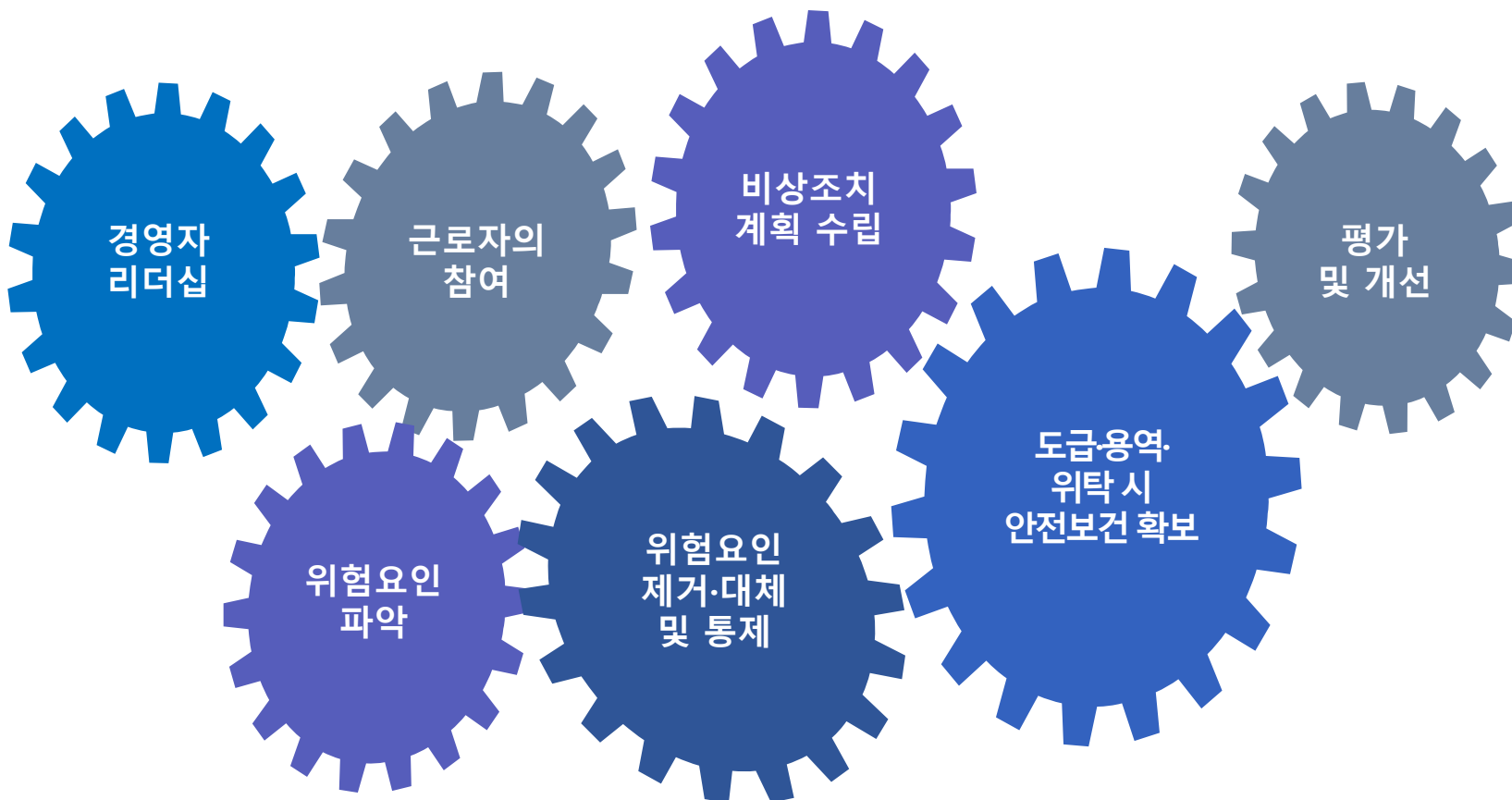
## 1) 안전관리체계의 정의 및 필요성

### ② 안전관리체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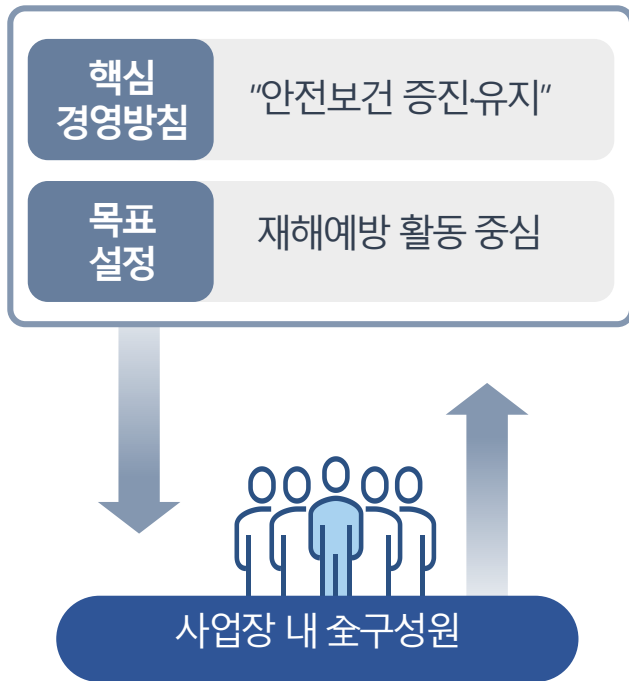
과거의 임기응변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 필요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① 경영자 리더십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설정



- ☑ 「안전보건 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에게도 안전 보건 경영방침 을 알립니다.
- ☑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 평가
- ☑ 사업장 내 작업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방안 마련, 관련 수급인과의 협의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① 경영자 리더십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설정

####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피앤에스네트웍스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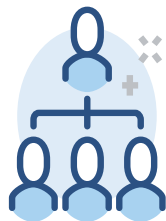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2년 1월 1일

피앤에스네트웍스 대표이사 박재운 (서 명)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① 경영자 리더십 (2)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 배정



안전보건 담당  
조직 구성

☑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재편**

- 대기업: 가급적 경영자 직속 기구로 배치
- 중소기업: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 자원 활용 검토



예산배정

☑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예산 배정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① 경영자 리더십 (3) 구성원의 참여 독려



-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 확보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이 아닌, 모든 경영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화
-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사내 규정에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 규정
- ☑️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부여, 적극적 참여자에 인센티브 등 긍정적 분위기 조성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② 근로자의 참여 (1) 정보 공개

☑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홈페이지에 게시
-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정보 공개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② 근로자의 참여 (2)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근로자대표 참여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 운영




- 신고 및 개선방안 제안
- 익명성 보장
- 인센티브 부여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② 근로자의 참여 (3)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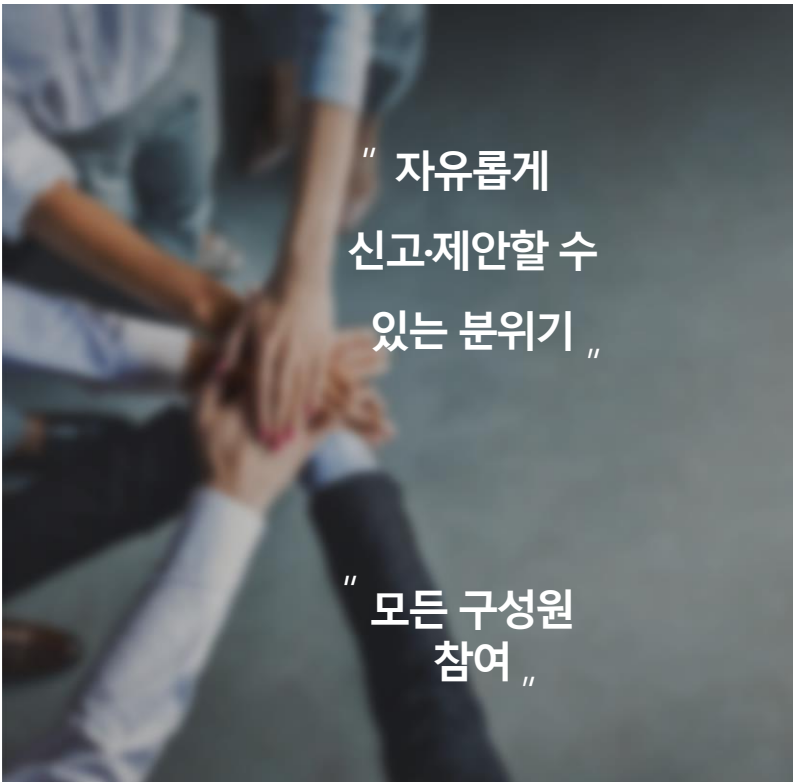
-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단시간 실시
-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결정

**유의사항**

-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 이행결과, 안전보장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 공식 작업절차에 반영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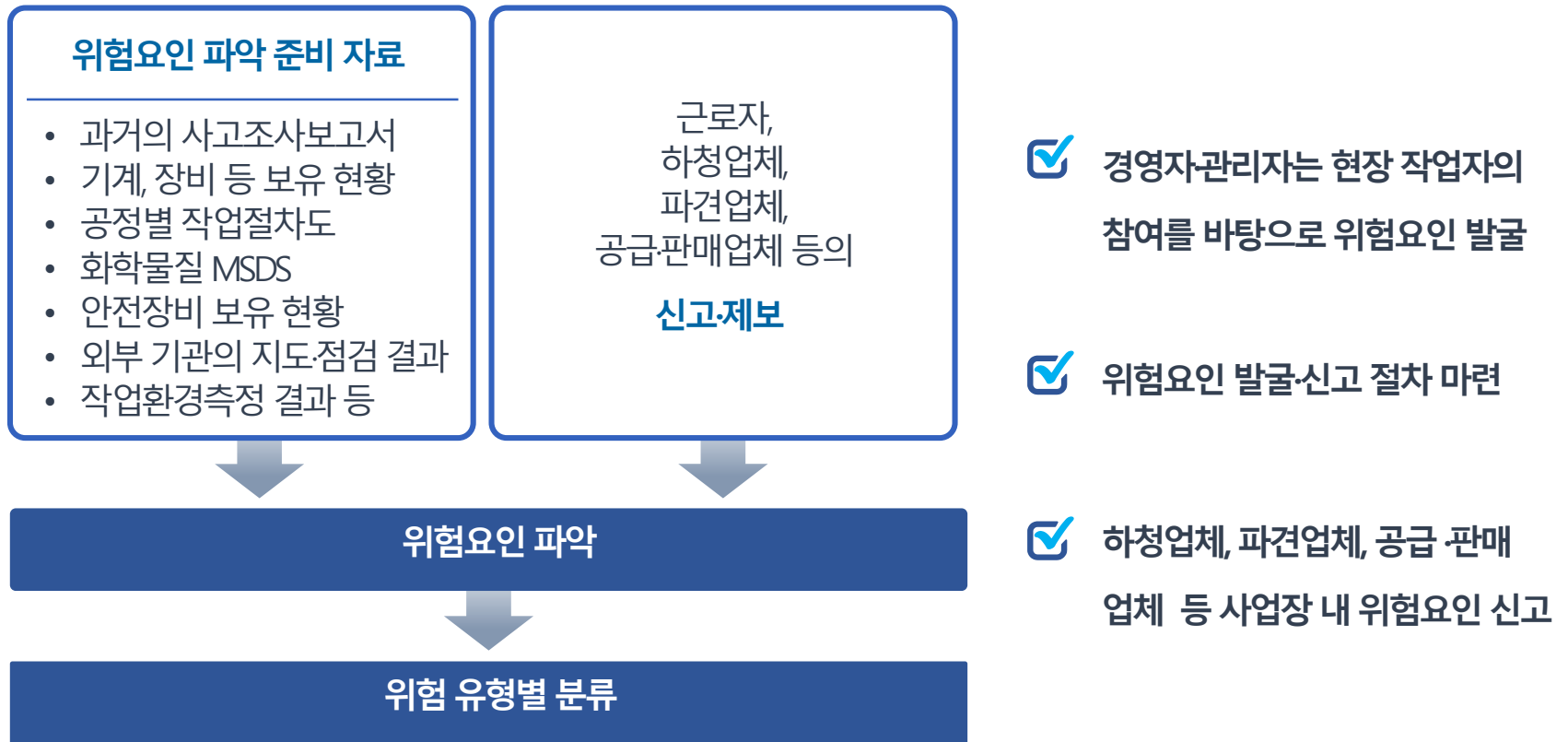
### ② 근로자의 참여 (4) 자유롭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문화



- ☑ 신고·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불이익은 제거
- ☑ 정기적으로 조치결과 공개
- ☑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 참여
- ☑ 하청,파견, 공급·판매업체와 의견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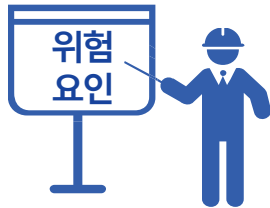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1)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수집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2) 위험요인 참고 자료



- ① 위험요인 파악은 주기적으로 실시(정기 파악), 사고발생, 기계장비 도입, 공정 변화 등 위험요인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 시 수시(수시 파악) 실시
- ② 위험요인 유형별(위험기계·기구, 유해인자, 위험장소, 작업형태) 기록·관리
- ③ 위험요인 파악 시 안전담당 인력 뿐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 참여
- ④ 수시로 위험요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신고절차 운영

☑ 위험요인 파악 시  
참고 자료

-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의 재해 보고서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 공정별 작업절차도
- 작업환경측정 결과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 근로자 교육자료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



-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현상을 분석하여 위험요인 파악
  - 아차사고 공유 채팅방 개설
  - 우수발굴자 포상제 도입 등 활용
- ☑️ 사고 조사는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 유사 작업자 참여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4) 위험기계·기구·설비 파악



☑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의 위험 유무 파악

☑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할 때는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 (설계를 통한 예방 원칙)

☑ 기계·기구·설비를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참고) 위험기계 · 기구 · 설비 파악 대장 예시

순번	기계. 기구. 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	10ton	1번 라인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끼임
	지게차							부딪힘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소 확인

✓ 현장 작업자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과 연계하여 파악

#### 재해유형

떨어짐,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뒤집힘,  
화재폭발누출, 질식, 폭염 등

사출성형기(위험기계)  
수리작업(비정형작업)



끼임 재해

비계(위험장소)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떨어짐 재해

통신선로 공사 현장의 경우  
공정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파악

#### 건설공정

터파기⇒ 흙막이⇒ 지보공⇒ 조립⇒ 기초바닥공사⇒ 철골  
설치⇒ 철근 조립⇒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마감⇒ 내부  
인테리어

- ① (계획·설계단계) 유해위험요인 검토(발주·설계자)
- ② (시공계획 수립) 주요 공정별 위험성평가(연간·월간)
- ③ (일일) 단위작업별 사전 위험요인 확인
- ④ (작업 직전) 안전미팅(TBM) 통한 위험요인 재확인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6) 작업 내용별 위험요인 관리 방법



##### ① 비정형 작업\* 위험요인 관리

\* 비정형작업: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 아닌 특정 사건 발생에 따라(신규설치, 정비·점검) 또는 여러 공간(운반, 상·하역 등)에서 이뤄지는 정형화되지 않는 작업

##### ② 작업별 위험요인을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공식화된 절차\* 운영

- ① 신규작업 등의 위험요인 파악 → ② 고위험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절차 마련 →
- ③ 도급·용역의 경우 작업의 안전성 확인 후 허가 → ④ 주기적 확인

##### ③ 작업의 위험요인은 작업장소,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재해유형과 연계 파악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6) 작업 내용별 위험요인 관리 방법

####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는지?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주기적인 절차가 없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있으나 발굴 절차 및 정리 미흡

- 안전보건 부서만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현장 작업자 등 다른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음
- 위험요인 발굴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음
- 사고발생, 기계·장비 도입 등 위험요인 변경에 따른 수시 점검 절차가 없음
- 위험기계·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작업 등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경영자·관리자,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절차를 가지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함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6) 작업 내용별 위험요인 관리 방법

#### ㉞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있는지?

☑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를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있지만 보충 필요

- 사업장 내 주요한 위험기계·기구·설비가 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계·기구·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형태에 대한 분석 미흡
- 해당 기기의 위험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모르고 있으며 일부 안전보건 담당자와 기기 운전자만 알고 있음

☑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를 사업주를 비롯한 사업장 내 구성원 대부분이 알고 있으며, 이를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6) 작업 내용별 위험요인 관리 방법

#### ㉔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보충 필요

- 사업장 내 주요 유해인자가 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화학물질 뿐 아니라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등) 등도 파악되어야 함
- 유해인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유해인자에 대하여 일부 안전보건 담당자만 알고 있음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사업주를 비롯한 사업장 내 구성원 대부분이 알고 있으며, 이를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6) 작업 내용별 위험요인 관리 방법

#### ㉔ 작업내용(형태)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는지?

☑ 작업내용에 따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ex 안전작업절차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작업내용을 고려한 위험요인 파악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충 필요

- 비정형 작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관리 미흡

- \* 비정형작업: 기계의 설치·정비·수리, 청소, 물품의 상·하역 및 운반작업 등

- '작업별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가 규정 등으로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고위험 작업임에도 안전작업절차가 누락된 경우가 존재

- 새로운 작업(기계·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화 등)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음

☑ 작업 내용별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함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③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6) 작업 내용별 위험요인 관리 방법

㉔ 작폭발 위험, 밀폐공간, 추락 등 고위험장소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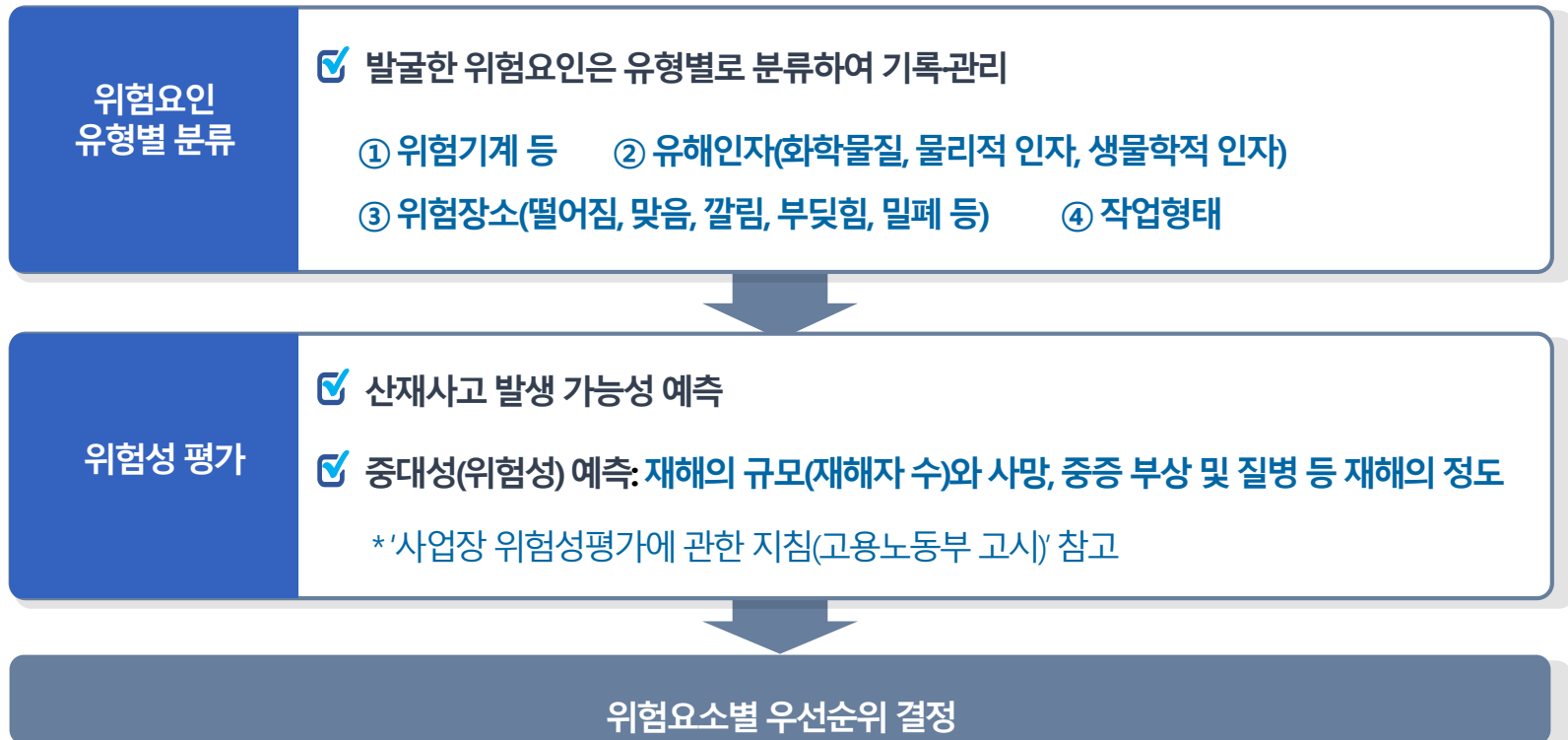
- 사업장 내 고위험장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가 모름
- 사업장 내 고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붙여 관리하나, 해당 장소 출입 시 또는 작업 시 별도 절차는 없음
- 사업장 내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허가절차\* 를 통해 관리함

\*폭발위험장소 작업 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허가 등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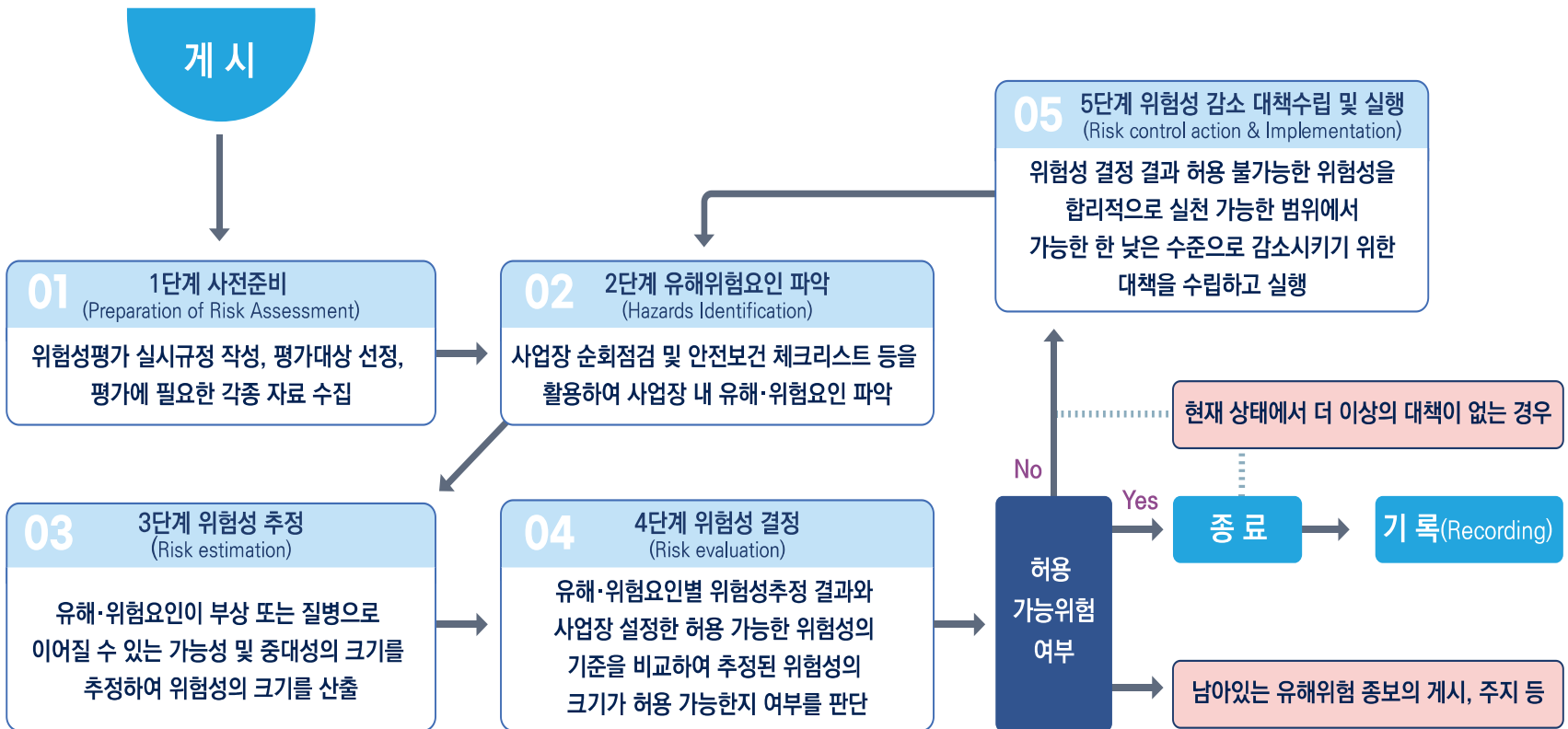
###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1) 위험성 평가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우선순위 결정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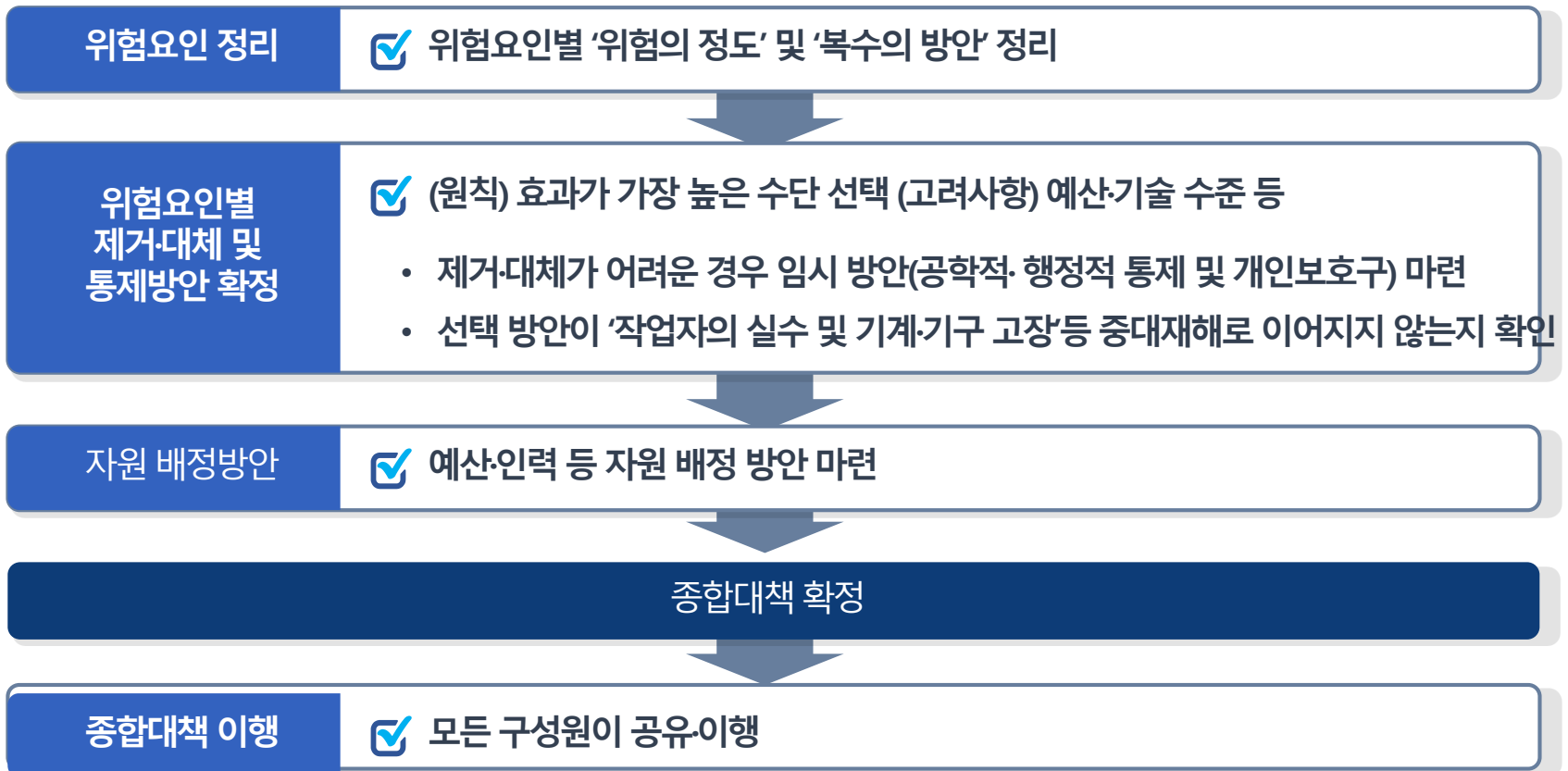
###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2) 위험성 평가 실시 흐름도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3) 대책 수립 및 이행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4) 교육 훈련



- 모든 구성원**
  - ☑ 직무 관련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기법 교육
  - ☑ 다양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시점과 방법
  - ☑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과 전반적인 절차
  - ☑ 교육훈련 내용은 사내 인트라넷 동영상 및 문서로 등록
  - ☑ '정기적 정보 제공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 주기적 실시
- 경영자관리자**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필수 경영행위로 수행
  - ☑ 사업장 내 위험 요인별 통제방안을 숙지하고 지휘감독
- 관리감독자**
  - ☑ '작업 전 안전미팅(TBM)'을 활용, 기본 안전수칙 상기점검
- 도급·용역위탁**
  - ☑ 계약 시 사업장 위험 요인별 대책을 설명, 이행 독려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교육 훈련 주기 및 시간

☑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최저 교육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시(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 2시간	• 16시간
	일용		• 1시간	-	• 1시간	• 2시간
특고	일반		• 2시간	-	-	• 16시간
	단기·간헐		• 1시간	-	-	• 2시간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 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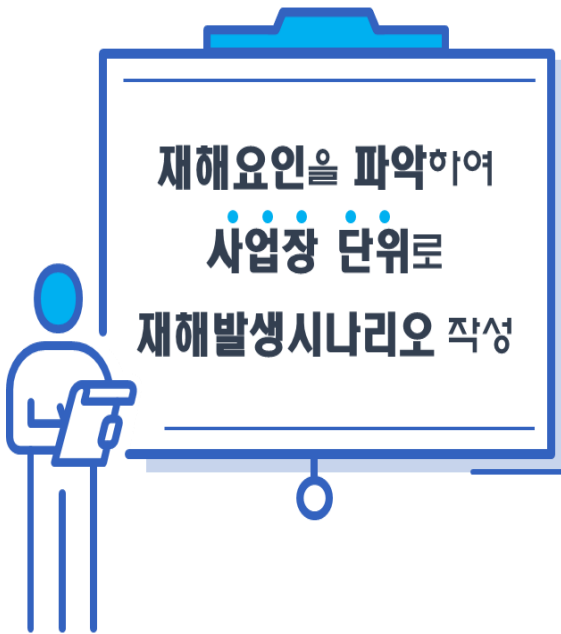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6) 연간 교육 계획 예시

연간 교육계획															결재	작성	검토	승인	
NO	교육구분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명)	교육방법(내·외부)	비고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용역위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30명	집체(내부)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발생시	집체(내부)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			9명	집체(외부)		
4	○			특별안전보건교육												발생시	집체(내부)		
5	○			비상조치계획 교육 및 훈련					○						○	전사원	집체(내부)		
6	○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7		○		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발생시	집체(내부)		
9			○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						○			전사원	집체(내부)		
10			○	특별안전보건 교육												발생시	집체(내부)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1) 재해발생 시나리오 작성



- ☑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
- ☑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은 '재해 발생 시나리오' 를 작성
- ☑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마다 발생 가능한 재해 상황이 다르므로 사업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2) 비상 조치 계획 수립

#### 비상조치계획

☆ 상황보고·전파(내·외부)

☆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방안

☆ 근로자 대피방안

☆ 추가피해 방지방안

☑ 작성된 재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치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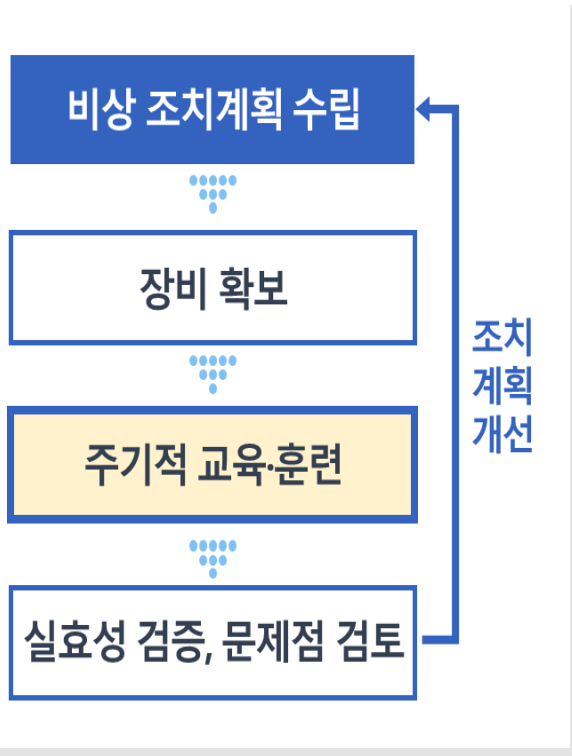
-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방안, 근로자 대피방안, 추가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

☑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

☑ 조치계획에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작업자의 작업중지권 반영 (중간 관리자에게도 부여)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3) 주기적 훈련



-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과 대피방법 교육
- ☑ 비상조치계획 이행을 위한 장비 확보, 주기적 훈련
- ☑ 사업장별 조치계획 훈련을 통해 실효성 검증
- ☑ 훈련과정 중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 조치계획 개선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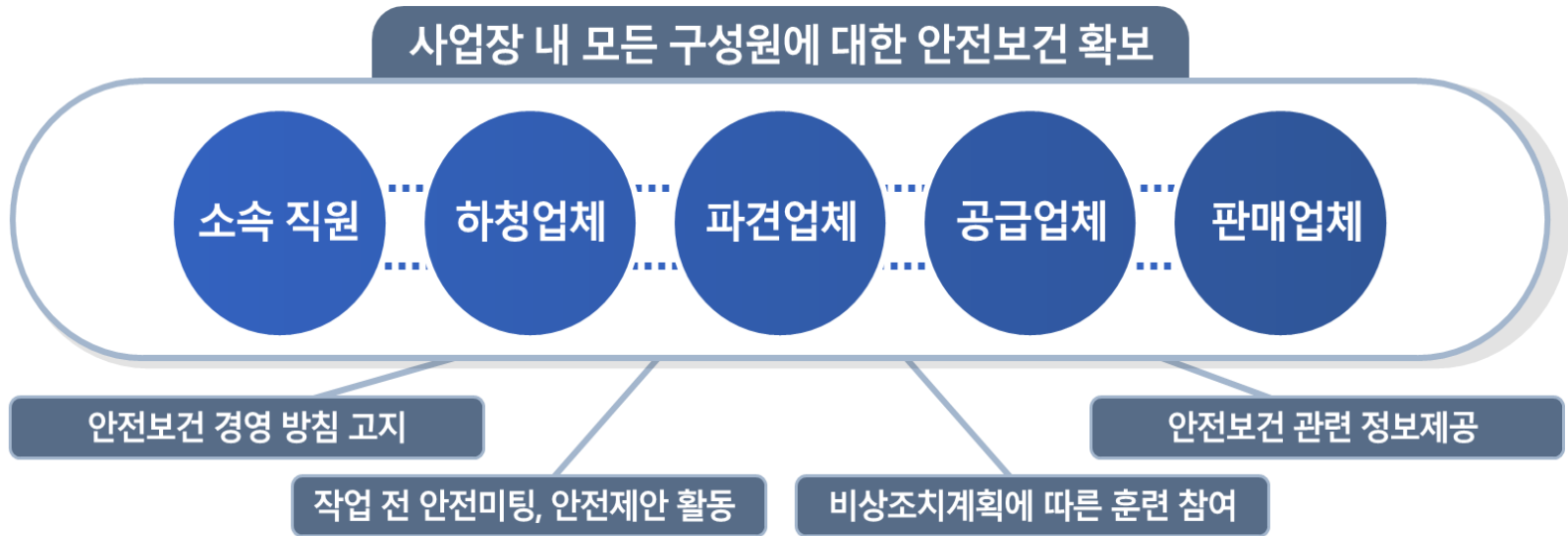
###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경우 계약하지 않음
  
-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 (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 절차 준수, 정기 순회 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불이행의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도 미리 마련
  
-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2)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 ☑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 보건의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 개선
- ☑ 하청·파견·공급·판매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 소통·협력체계 구성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3)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b>I. 안전보건관리체계</b>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b>II.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b>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4) 도급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 활동

#### 계약

- ① 도급·용역·위탁 업무 검토 01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검토 계약
-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입찰 02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03
  - 안전작업계획서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04
  -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 조건 명시)

#### 수행

- ⑤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이행 05
  - 안전보건 정보제공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 안전 작업허가제 실시
  -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 (이용 협조)

#### 종료

- ⑥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 06
  - 안전보건 업무 평가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5) 우수 사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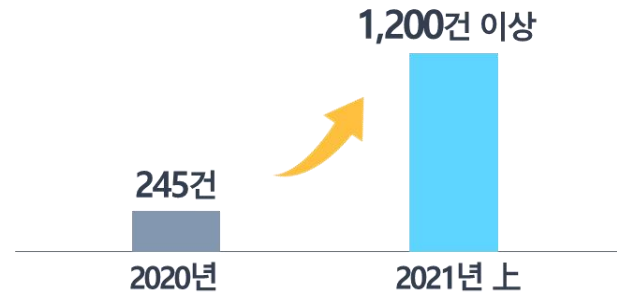
위험할 땐 'NO'라고 외치는  
'작업중지권'으로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01 협력업체 '작업중지 독려제도' 시행

- 표준계약서에 작업중지에 따른 협력업체의 손실보상 명시
-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우수 협력업체를 시상
- 협력업체 평가항목에 작업중지권 접수 건수를 반영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건수]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⑦ 평가 및 개선 (1)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관리

본사, 사업부서별,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 설정



목표달성 여부 정기적 평가



모든 구성원에 공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

- 경영방침 게시건수(온오프라인)
-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근로자 인지율
-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
- 근로자의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위험요인 대비 제거관리 조치 이행률
- 기계·설비의 정기검사 실시율
-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 작업허가제 등 도입·개선 건수
-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률
- '재해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건수
-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

☑ 설정한 목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양호함에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점검하여 개선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⑦ 평가 및 개선 (2) 안전보건체계 정기 점검



현장에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 점검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체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는 데 집중

## 점검팀 구성

☑ 주요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구성

## 점검내용

☑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관리 등 핵심요소 전반을 점검

## 점검 절차

☑ ① 면담 ② 서류확인 ③ 현장점검

## 특별점검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시 시행, 근본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아차사고에 대한 특별점검 시 징계 등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⑦ 평가 및 개선 (3) 정기 점검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의무 : 반기 1회 이상

- ①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시행령 제4조 제5호)
- 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7호)
- ④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8호)
- ⑤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9호)
- 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시행령 제5조 제1호)
- ⑦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 점검(시행령 제5조 제3호)

## 2) 안전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 ⑦ 평가 및 개선 (4) 특별 점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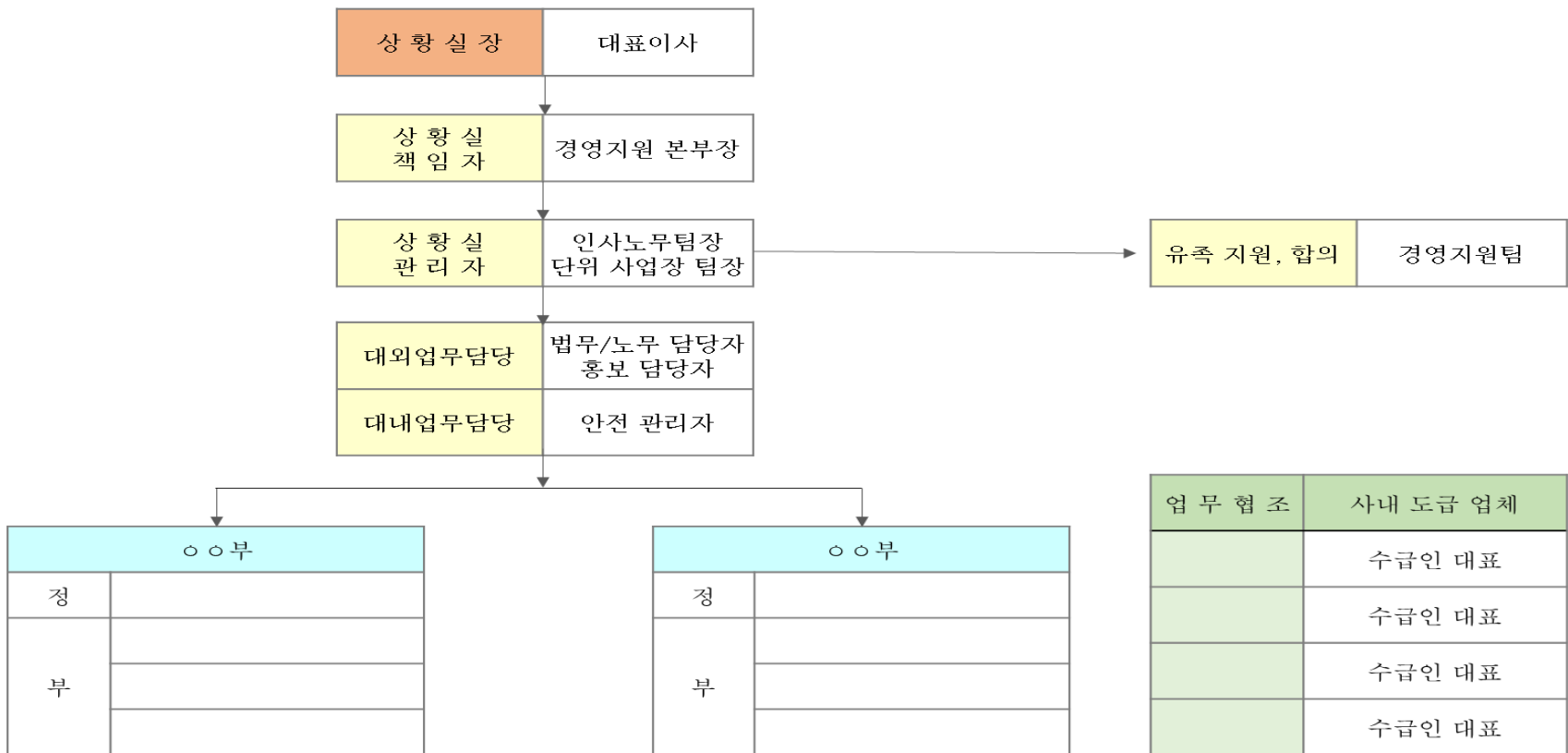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도출합니다.

- ① **경영자 리더십** ▶ 적절한 예산, 인력 등 자원이 배정되어 투입되었는지
- ② **근로자 참여** ▶ 근로자가 해당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지 못한 이유,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이유 등
- ③ **위험요인 파악** ▶ 사전에 파악되지 않았던 위험요인이었는지, 사전파악되지 않은 원인
- ④ **위험요인 제거, 통제 등** ▶ 사전에 파악됐었던 위험요인임에도 그 위험요인이 제거·통제되지 못했던 원인  
(안전작업절차 미작동, 사전작업허가 대상 미포함 등)
- ⑤ **비상조치 계획** ▶ 급박한 위험임에도 작업중지 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
- ⑥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조치** ▶ 수급인 근로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원인(정보공유 미비, 참여소통 부족, 관리·감독 부재 등)



## 1) 중대재해 대응 체계

### ① 지휘 체계 (1) 지휘체계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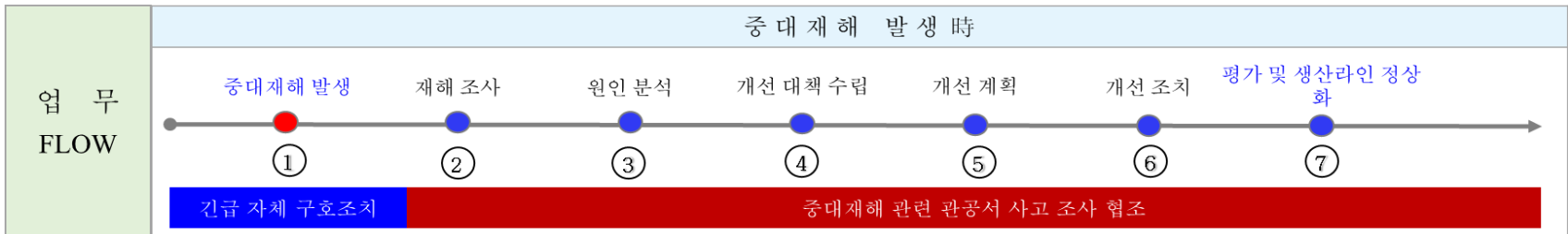
## 1) 중대재해 대응 체계

### ① 지휘 체계 (2) 상황실 담당자 임무

담당자	역할명	주요 역할/임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상황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결정 총괄·지휘 (대피여부 판단 등)</li> <li>• 2차 재해 방지차, 해당 공정 종사자 대피 지시</li> <li>• 당사 피해복구 및 협력업체 피해복구 활동지원 지시</li> <li>• 관련 관공서 사고조사 적극 협조 지시</li> <li>• 대내/외 대응 담당자 지정</li> </ul>	
경영지원본부장	상황실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장 부재 시 임무 대행 / 상황실장 지시에 따라 상황실 업무 총괄</li> </ul>	
경영지원팀장	상황실 관리자 (모니터링 /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 운영 후 실시간 상황 정리 및 보고</li> <li>•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종합하여 상황실장, 상황실 책임자에게 보고</li> </ul>	
안전 관리자	대내대응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처치 및 병원 긴급 후송</li> <li>•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사고 발생 조사</li> <li>• 대외기관 대응 (고용 노동부 등)</li> <li>•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 상황실장(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li> </ul>	
커뮤니케이션 담당 법무 / 노무 담당자	대외대응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족에게 사실 통보</li> <li>• 병원 동행, 의사진단 파악</li> <li>• 부검결과 체크</li> <li>• 유가족 장례지원</li> <li>• 민, 형사적 합의 주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해발생보고서 작성</li> <li>② 사고 관련 자료 준비</li> <li>③ 노동부, 경찰 조사 대응</li> <li>④ 민, 형사상 합의 지원 (법률검토)</li> </ul>
현장 총괄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가 발생한 기계 정지 및 재해자 구출</li> <li>• 재해자 인적사항 및 목격자 진술 확보</li> <li>• 보고 및 현장 보존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li> </ul>	

## 1) 중대재해 대응 체계

### ① 지휘 체계 (3) 중대재해 발생시 업무절차



내 용	1	중대재해발생	기계 정지 → 재해자 응급조치 → 관계자 통보 (대표이사 및 관련 관공서) → 2차 재해 방지 (중사자 대피) → 현장보존
	2	재해조사	육하 원칙에 의한 사상자 보고 → 잠재 재해 원인 확인 (관련 관공서 사고조사 협조 必)
	3	원인분석	① 사람 (직접 원인) / ② 물체 (직접 원인) / ③ 관리 (간접 원인)
	4	개선 대책 수립	① 동종 재해 방지 / ② 유사 재해 방지
	5	개선 계획	수립된 대책의 실시 (육하 원칙에 따라)
	6	개선 조치	대책 계획의 실시
	7	평가	평가 및 생산라인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통한 작업중지 해제 신청)

## 1) 중대재해 대응 체계

### ① 지휘 체계 (4) 비상상황 방송운영 체계 예시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발렉스서비스 관리지원팀에서 중대재해 발생 관련 내용 전파드립니다.  
금일 00 시 00 라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00공장 내 전 임직원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행동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전 임직원께서는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00라인은 2차 피해 방지차 전면 작업을 중지하며, 00 라인의 근무인원들은  
현 시간부로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00 휴게실로 이동하시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라인 근무인원들을 제외한 인원들은 방송에서의 지침을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00라인의 관리감독자께서는 현장을 보존하여 주시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임직원께 행동지침 안내 말씀드립니다.

SNS나 언론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비상연락망 및 개별 문자메세지로 자세한 진행 경과 및 추가 지침 등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X 2회)

## 1) 중대재해 대응 체계

### ① 지휘 체계 (5) 개별문자 체계 예시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관리지원팀에서 중대재해 발생 관련 행동 지침 안내 문자 드립니다.  
SNS나 언론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진행 경과 발생시, 비상연락망 및 개별 문자메세지로 자세한 경과 및 추가 지침 등을 안내 및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 진행경과

- ○월 ○○일 ○○시 : 00 공정 근무자, 중대재해 발생
- ○월 ○○일 ○○시 : 병원 이송
- ○월 ○○일 ○○시 : 사망 진단
- ○월 ○○일 ○○시 : 장례 절차 안내

#### ■ 행동지침

- 목격자, 관리감독자에게 재해 관련 진술 협조
- 잘못된 정보 또는 불필요한 사항을 SNS 또는 언론매체에 전파 금지
- 변동사항 발생시 추가 안내 예정
- 현장 보존
- 별도의 지시 및 안내 전, 재해 발생 기계(설비) 사용 금지

## 1) 중대재해 대응 체계

### ② 대응 체계 (1) 초기 행동 요령

상황별 초기 행동 요령	
감 전	즉시 전원 차단 및 작업 중지
질 식	작업 중지 및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교통 사고	사고 차량 엔진 정지, 비상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 대피(2차 사고 위험 회피)
화 제	초기 진화 실시,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히 대피
무너짐	작업장 내 기계 및 설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설비 끼임	재해발생 기계 및 설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호흡기 및 피부 보호, 신속한 대피
인화성물질 누출	점화원 발생 억제, 접촉 금지

## 1) 중대재해 대응 체계

### ② 대응 체계 (2) 응급 조치 요령

구분	응급처치	피해야하는 처치	병원 이송 / 내원
상처가 난 경우	①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상처부위를 1-2분간 씻는다. ② 지곳이 압박하여 지혈을 유지하고, 깨끗한 천이나 거즈, 붕대로 감아준다.	① 소주 또는 된장 등의 민간요법을 피한다. ② 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추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얼음을 직접 닿게 하지 않는다. ③ 붕대 압박 시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는다.	① 지속적으로 피가 나는 경우 ② 근육이나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 ③ 상처부위에 파상풍 등 염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화상을 입은 경우	① 화상 부위의 옷을 잘라 제거한다. ② 흐르는 물에 10-15분 정도 충분히 열기를 식힌다. ③ 시간이 지나면서 부종이 진행되면, 장신구 등을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제거한다.	①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은 지양한다. ② 소주 또는 된장 등의 민간요법을 피한다. ③ 터지지 않은 수포는 일부러 터트리지 않는다.	① 화상 부위 조임 증상(부종 악화) ② 열갈, 관절, 생식기 부위 화상 ③ 화상 환자는 파상풍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필히 병원 방문 해야함
척추를 다친 경우	① 머리, 목이 과도하게 젖혀지는 경우, 척추 손상을 의심할 것 ② 잘못된 응급처치는 사지 마비의 후유증을 남김 ③ 119 도착 전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① 척추의 안정성이 확인되기 전,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이송해서는 절대 안된다. ② 헬멧 제거 훈련이 안된 일반인은 헬멧을 벗기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①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② 팔다리의 감각 저하 및 운동 마비 증상의 경우 ③ 외관상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손가락이 잘린 경우	① 통증, 심리적 불안감으로 쇼크 등 갑자기 쓰러지면 2차 피해를 주의할 것 ② 깨끗한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 (절단면 X) ③ 절단된 부위를 깨끗한 거즈로 감싸고, 봉지 등 밀폐하여 통에 보관, 이때 얼음을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① 지혈체를 뿌리지 않는다. ② 물 또는 얼음에 신체부위를 직접 담그지 않는다. ③ 과도하게 오래 지혈대를 적용 하는 것은 오히려 신체 부위의 접합을 방해할 수 있다.	병원 이송 / 내원 必
배와 가슴이 찢린 경우	① 박혀 있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② 바로 누울 수 없다면, 옆으로 누운 자세 그대로 이송 ③ 복부 관통상으로 내장 적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염수나 물로 거즈, 천 등을 적셔 내장을 감싸 습기 유지	① 물체가 박힌 관통상에 경우, 절대 빼지 않는다 ② 내장 적출 시 손으로 밀어 넣지 않는다. (세균 침투) ③ 현장에서 말라 붙은 피를 제거하지 않는다.	병원 이송 / 내원 必
눈을 다친 경우	① 안구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절대 누르거나 비비면 안된다. ② 안구에 이물질이 박힌 경우, 안구운동을 최소화 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③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시켜주어야 한다.	① 안구에 박힌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는다. ② 자가진단을 하지 않는다. ③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하는 행위를 피한다.	① 눈이 흐릿하거나 잘 안보이는 경우 ② 눈동자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③ 안구 주위 뼈 골절 시, 미주신경이 자극 되어, 구토, 오심, 서맥 등 드물게 부정맥 등 실신할 수 있음
외상에 의한 쇼크	① 기도 보조(기도가 막히는 것 예방), ② 호흡 보조(가슴의 움직임 확인), ③ 순환 보조(위급시 심폐소생술 진행), ④ 장애 확인(의식, 통증자극을 통한 반응정도 확인) ⑤ 상처 확인 및 체온 조절(체온이 떨어지면 지혈이 잘 안되므로 옷 담요 등으로 따뜻한 환경을 조성)		

## 1) 중대재해 대응 체계

### ② 대응 체계 (3) 현장 훈련 시나리오

훈련상황	진행자	중대재해 발생時
안내방송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녕하세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li> <li>▶ 잠시 후 (사업장명) 중대재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li> <li>▶ 금일 실시하는 중대재해 대응 훈련은 해당 공정에 중대 재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재해자 구출과 응급조치, 재해 현장을 보존하는 등 중대재해 피해를 줄이거나, 2차 사고를 방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li> <li>▶ 이에, 중대재해 대응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li> </ul> <p>특히, 훈련 중에 이동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훈련시작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부터 (사업장명) 중대재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li> <li>▶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임직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안내 방송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li> <li>▶ [화재경보음을 울린다(사이렌 취명)]</li> <li>▶ [중대재해 재해자 발생]</li> <li>▶ [관리감독자와 공정 내 주변 종사자가 설비의 가동을 비상중단하고, 재해자를 구출]</li> <li>▶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사고발생 전달]</li> <li>[안전관리자]</li> <li>▶ 사내에 계신 임직원에게 알려드립니다. 현 시각 OO 공정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N)명이 중상을 입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li> <li>▶ 이에, 해당 공정의 전체 종사자께서는 OO 휴게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관리감독자께서는 현장을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잘못된 정보 또는 불필요한 사항을 SNS 또는 언론매체에 전파 금지 말씀드리며, 타 부서 관리감독자께서는 목격자 진술 확보에 대해 업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li> </ul>
훈련종료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임직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정렬하여 주십시오.</li> <li>▶ 중대재해발생시 대피요령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요령 낭독 및 당부 말씀</li> <li>▶ 이상으로 (사업장명) 중대재해 대응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li> </ul>



## 2) 치유와 회복

###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예방 조치 및 운영

####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조직 내에서의 예방조치 사항

- 회사, 관리자, 근로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활용하여 트라우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 것.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교육은 직무스트레스 관련 교육에 포함될 수 있음
- 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 중에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필요시 근로자가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연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상담 기관의 연락처를 게시
- 근로자와 상담사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사고 후 약 1개월간의 심리적 변화가 근로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안내
- 시간의 흐름과 심리 상담을 통해 충격 회복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때 회복에 대해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됨
- 상담 종결 후 상담심리사는 ‘상담대상자의 사생활과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별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음을 인지할 것

####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체계



## 물류 등 운송 직군 관련 재해 유형

개요	재해 내용
화물자동차 결속용 고무로프 파단으로 떨어짐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 위에서 로프걸이 작업 중 당기고 있던 고무로프가 끊어지면서 약 2m 높이에서 떨어짐
우천 시 화물차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짐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 방음벽에 차량 전면부가 부딪치면서 한쪽 한쪽으로 기울어 탑승자 전원 부상
탑차 중량물 하역 작업 중 끼임	5톤 탑차에서 반도체 설비를 바닥에 내리는 중 미끄러져 왼쪽발이 깔림
물류창고 지게차 바퀴에 끼임	물류창고에서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작업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앞바퀴에 발이 끼임
급식 배당 차량 하역 중 허리 부상	급식 배당을 가서 차량에서 식파, 그릇, 반찬 등의 중량물을 들고 하차 중 허리 부상
하역 작업 중 후행작업 차량과 접촉	차량에 실린 과일을 내리는 작업 중 후진하는 차량에 발등과 발가락을 밝힘
정비 중 엔진 구동부에 끼임	버스 후미 차체를 열고 가동중인 엔진 부위를 점검하던 중 입고 있던 상의 옷자락이 동력 전달부에 걸림
장시간 근로, 야간 근로 등에 따른 뇌, 심혈관 질환	운전원에게 장시간 근로, 잦은 야간 교대작업으로 인한 생체리듬 파괴 및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뇌, 심혈관질환 발생
교통사고	감기약을 먹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에 차량이 부딪힘

# Thank you

PANTECH C&I

## [참고문헌]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실무길잡이(육상 및 수상 운송업)』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법령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작 : 2022년 2월  
· 팬택씨앤아이계열 경영전략실